

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징수 의무자 인적 사항	상 호(법인명) [] 종교단체 * 해당되면 √ 표기 사 업 장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	대 표 자 업 종 전 화 번 호

상 시 고 용 인 원 수 의 계 산

①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 1 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고용인원 누계 (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 월 말일 현재의 고용인원 누계를 적습니다)	② 평균인원수 (① / 월수)
--	---------------------

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 지급 및 징수 현황

(단위: 원)

(일용근로 소득은 제외)

월	인원	적 용 연 도		직 전 연 도		비 고
		총지급액	소득세 징수액	총지급액	소득세 징수액	
1월						
2월						
3월						
4월						
5월						
6월						
7월						
8월						
9월						
10월						
11월						
12월						
합 계	명					

년 월부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하여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86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원천징수의무자

(서명 또는 인)

세 무 서 장 귀하

작 성 방 법

- "② 평균인원수"란에는 평균인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.
- "적용연도"의 총지급액(비과세포함)은 신청월의 전월까지 지급분을 기재합니다. 다만,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,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에는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.
※ "적용연도"란은 6월에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 다만, 신규사업자는 12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작성합니다.
-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 고용인원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.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※ 이 신고서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